

2026년 Tokyo PMF · GTM 프로그램 창업기업 모집 공고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유망 창업기업의 도쿄 현지 시장 진출 가능성
검증 진출(희망)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2026년 Tokyo PMF·GTM
프로그램」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창업진흥원장

- ※ 본 공고는 창업진흥원 도쿄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공고로, 국내 및 도쿄
현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 국내 소재 창업기업과 국외 창업기업 모두 본 프로그램에 신청·참여할 수 있습니다.
- ※ 본 프로그램은 일본 도쿄 시장 진출(희망) 창업기업의 PMF 검증 및 GTM 전략수립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업화자금을 제공하지 않는 프로그램입니다.
- * 국내 창업기업의 일본 현지 행사 참여 시 항공·숙박 실비(100만원 이내) 지원 예정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일본 도쿄 진출(또는 희망) 스타트업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시장성 검증 등을 통한 현지 시장 진출 전략 마련
- ☐ 지원대상 : 현지진출(희망) 창업기업(국외창업* 및 플립기업 포함)
* 한국인 또는 국내 법인이 국외(일본)에서 법인을 설립해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
총액의 일정 규모 이상을 보유, 실질 지배력을 행사하는 7년(신산업 10년) 미만
- ☐ 운영기간 : 선정일 ~ 10월 중(예정)
- ☐ 선정규모 : 10개사 내외
- ☐ 지원내용 : 기업진단 및 타깃시장 진단분석, 일본(도쿄) 시장진출
실증, SVC도쿄 개소식(예정) 초청 및 네트워킹 연계 등 지원

2

지원내용

□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2026년 Tokyo PMF·GTM 프로그램
- (운영기간) '26.9월 ~ 10월 * 선정기업 SVC도쿄 개소식 참여 필수

< 추진절차(예시) >

기업 선정	기업진단	네트워킹 등
• 선정평가 - 서면 및 대면평가	• 선정기업-글로벌 AC 등과의 매칭을 통한 일본 시장 진출 가능성 진단 • PMF 검증 결과 기반 GTM 전략 리포트(영문) 작성 및 현지(도쿄) 창업생태계 네트워크 연계	• SVC도쿄 개소식 초청 및 부대행사(IR 피칭, 네트워킹 등) 참여 • 사업 종료 후 성과관리
~'26.9월중	~'26.10월 초	~'26.10월 중

* 선정기업 대상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참여기간 등 세부절차 안내 예정

- (지원규모) 도쿄 진출(희망) 창업기업 10개사
- (운영방법) 온·오프라인 사전 준비와 창업진흥원 도쿄사무소 개소식 연계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 운영 예정

□ 주요 프로그램

- ①선정기업별 시장진출 가능성 진단, ②시장 진출전략 고도화, ③현지 IR 및 네트워킹 연계 지원

1. 선정기업별 PMF 검증

- (PMF 프로그램) 일본 진출(희망) 창업기업의 정량·정성지표 기반 제품·BM의 적합성, 규제, 경쟁 구도, 리스크 요인 등 종합 분석
 - 일본 진출 희망 창업기업-일본 글로벌 AC 등과 매칭하여 일본 시장 진출 가능성 진단을 위한 PMF 검증 지원

2. JAPAN GTM 프로그램

- (GTM 프로그램) PMF 검증 완료 기업 대상 일본 시장 진출 전략 분석 및 기업별 접촉 가능한 네트워크(투자자, 바이어 등) 연계
- PMF 검증 결과 기반 GTM 리포트*(영문) 작성 및 연계 가능한 글로벌 네트워크 등 핵심 정보제공
- * (리포트 구성) 목표고객 정의, 포지셔닝·메시징, 경쟁 환경 분석, 타깃 기업·CVC 리스트, 아웃리치 시퀀스 등 GTM 관련 세부사항 포함

3. 현지 IR/네트워킹 연계

- (현지 개소식 및 IR 참여) SVC도쿄 개소식(10월 예정)* 초청 및 현지 창업생태계 구성원 초청 IR 피칭 개최
- 일본 진출(희망) 창업기업이 현지 창업생태계 구성원을 대상으로 자사 제품·서비스에 대한 시장성·성장성 등 검증 기회 마련
- *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선정기업 대상으로 세부일정 안내 예정
- (네트워킹 이벤트) 선정기업별 관련 산업군 현지 기업 관계자, 투자자, 파트너 등을 초청한 소규모 네트워킹 이벤트 개최
- 일본 진출(희망) 창업기업이 현지 정부·지자체, AC·CVC, 대학, 관계기관 등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일본 창업생태계 편입 지원
- (후속지원 마련) 일본 진출 희망 기업 대상 세무·법무 컨설팅, 기 진출기업 대상 네트워킹 연계 등 후속 지원 제공

3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음 페이지 '신청제외대상' 참조)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의 도쿄 기진출, 또는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창업기업* (단, 신산업창업분야*는 업력 10년 미만)

* [참고1] :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2] : 신산업 창업분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기업에 해당되는 국외창업기업*, 플립기업**도 지원 가능

* 한국인 또는 국내 법인이 국외(일본)에서 법인을 설립해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 총액의 일정규모 이상을 보유, 실질 지배력을 행사하는 7년 미만 기업

** 해외(일본)에 지주회사 또는 본사를 신설하고 국내 회사를 자회사로 전환한 기업

☐ 신청 제외 대상(국외 창업기업인 경우 일부만 해당)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①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②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③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2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참고3]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 국내외 공통
- 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 ⑥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국내외 공통
- ⑦ 2026년 동 사업 수행사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 ⑧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⑨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국내외 공통

□ 의무 및 역할

- 본 사업 참여 인력은 해외 출장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일본 (도쿄) 진출을 위해 영어 또는 일본어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함
* 일본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경영관리비자' 자격 요건 중 대표자의 외국어 구사능력(CEFR B2, JLPT N2 112점 이상) 필요(2025.11.5. 개정)
- 실제 일본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기업별 상황에 따라 대표 또는 영업이사 등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자가 참여
- 현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해외 체류기간동안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 및 수행사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4

신청 및 접수

- ☐ 신청기간 : '26.8.19.(수) ~ 9.3.(목) 18:00까지
- ☐ 신청 및 접수 : 이메일 신청(tokyo@kised.or.kr)
- ☐ 문의처 : 창업진흥원 도쿄사무소 tokyo@kised.or.kr
- ☐ 필수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자유양식)

* 한국어/영어/일본어 중 한국어 자료 필수 제출하되, 외국어 자료는 영어 및 일본어 중 택일하여 제출.

** 평가항목(서류/발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되, 형식 제한 없음
(단, 원활한 검토를 위해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최대 15페이지 내외 권장)

② 참가신청서(국문/영문) [붙임2] 양식

③ (국내)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국외) 법인번호지정통지서(일본)

5

평가 및 선정

- ☐ 평가절차
- 평가는 ①요건검토→②서류평가→③발표평가 순으로 진행로 진행하며, 단계별 평가점수는 해당 단계만 적용(서류평가, 발표평가 점수는 개별 산정)
-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은 9월 중순 진행

< 창업기업 선정 절차(안) >

①요건검토	②서류평가	③발표평가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 확정	제출서류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	발표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
창업진흥원 도쿄사무소	창업진흥원 도쿄사무소	창업진흥원 도쿄사무소

신청기업의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상기 일정은 신청기업의 수 등 대내·외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① **요건검토** :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② **서류평가**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를 심사하여 발표평가 대상자(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선정
 - * 서류평가 대상자가 2배수 이내일 경우 서류평가 생략 후 발표평가 진행 가능
- ③ **발표평가** : 프로그램 수행사가 포함된 평가위원회가 발표평가 진행하여 프로그램 참가기업을 선정
 - 인터뷰는 창업기업 대표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 응답을 통해 사업 아이템 및 일본(도쿄)시장 진출, 의지 등을 확인
 - * 인터뷰 시간은 기업당 20분 내외이며 영어 또는 일본어로 진행
 - ** 부득이한 경우 4대보험 가입 직원에 한하여 대체 가능
- ④ **최종선정** :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평가지표

- (서류평가) '사업발표자료'를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평가하며 일본(도쿄) 시장에 적합한 평가항목으로 구성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프로그램 적합성	- 창업 동기 - 프로그램 참여 목적 부합성 - 일본(도쿄) 시장 적합성	30점
비즈니스 모델	- 사업 아이템 차별성 및 우수성 - 일본(도쿄) 산업(시장) 분석 우수성 - 비즈니스모델의 지속성, 성장 가능성	30점
글로벌 진출 역량 및 가능성	- 일본(도쿄) 시장에 맞는 진출전략 우수성 - 일본(도쿄)시장 진출 및 매출 가능성 - 현지 시장 타겟팅의 구체성	40점

- (발표평가) ‘사업발표자료’ 및 ‘발표능력’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심층적인 평가항목 등으로 구성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프로그램 적합성	- 프로그램 참여 의지 - 프로그램 참여 목적 부합성 - 제품/서비스의 개발(상용화) 정도	30점
비즈니스 모델	- 사업 아이템 차별성 및 우수성 - 일본(도쿄) 산업(시장) 분석 우수성 - 비즈니스모델의 지속성, 성장 가능성	30점
글로벌 진출 역량 및 가능성	- 일본(도쿄) 시장 진출 준비 정도 - 일본(도쿄)시장 진출 및 매출 가능성 - 프로그램 참여계획 구체성 및 참여도 정도	30점
팀구성	- 관련 경험, 경력, 기술보유 등 우수성	10점

6

유의사항

-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한 경우 (제출서류 미제출의 경우도 해당)
 - 선정된 후 타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참여에 비협조적이거나 중도 취소하는 경우(참여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불성실 기업도 중도취소 조치 가능)

참고 1

창업 여부 기준표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참고 2

신산업 창업분야

※ 출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25조(유망신산업·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①	인공지능	⑩	자율주행차	⑲	스마트홈
②	빅데이터	⑪	전기수소차	⑳	신재생에너지
③	5G+	⑫	바이오	㉑	이차전지
④	블록체인	⑬	의료기기	㉒	CCUS (탄소포집·활용·저장)
⑤	서비스플랫폼	⑭	기능성 식품	㉓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⑥	실감형 콘텐츠	⑮	드론·개인이동수단	㉔	우주
⑦	지능형 로봇	⑯	미래형 선박	㉕	차세대 원전
⑧	스마트제조	⑰	재난 / 안전	㉖	양자
⑨	시스템반도체	⑱	스마트시티	㉗	사이버 보안

참고 3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연번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카지노 운영업	91242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국가데이터처, kssc.kostat.go.kr) 참고

-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2 1항 및 금융위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의거,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 제한에 따라, 해당 업태를 영위하는 자(기업)

연번	업태명
1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2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이용한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 자문, 개발 및 판매
3	가상화폐 거래소업
4	가상화폐 개발업
5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6	가상자산 취급업
7	가상자산의 교환, 이전, 매매업
8	암호화폐 공개(ICO) 관련한 컨설팅 및 전문서비스업

* 단, 가상자산사업자 중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통해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는 지원 가능

** 기준 업태는 추가·변경될 수 있음